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2차 지원계획 공고

충북지역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2025년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ı	나업	JH	Я
	. /	(T 😜	JΠ	М

	지역 제조 소기업의 특색과 환경에 적힙	, –		강화하고
(예산규모)	총 81.2백만원			
(사업기간)	협약일 ~ 2025.11.30	.일까지		
(관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대	간(이하 중진공	(')	
(지원금액)	기업당 국비 5천만원	<u></u> 한도		
(세부사업)	지역단위자율형 바우	처*		

-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

ㅇ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중점산업 집중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3가지 분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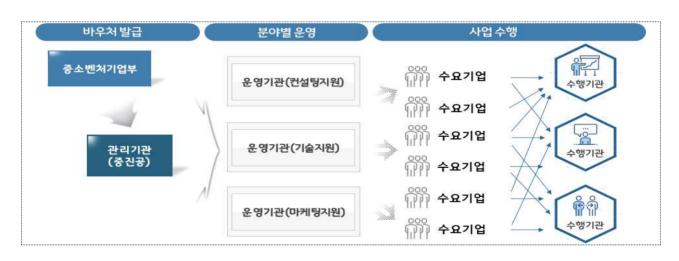
2. 관련규정 및 운영체계

□ 관련 규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2025.1)

□ 운영체계

- (수요기업)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
- **(운영기관)** 지원분야별 사업 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을 하는 기관
- o (수행기관) 수요기업에게 혁신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는 기관
- (관리기관[중진공]) 운영기관 모집·선정관리, 수요기업 신청접수 및 현장 평가, 사업비 집행·관리, 온라인 시스템 관리, 바우처 정산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25. 2. 11.(화) ~ 3. 6.(목) 18:00까지
 - 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온라인 시스템 (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플랫폼 오류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에서 신청
 - 메뉴 :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및 탄소중립) 중복신청 불가

□ 신청시 유의사항

ㅇ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 신청 전,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내 [메뉴판]-[서비스검색]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순위작성(사업별 신청서식 참조)
-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수강,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락 되며, 사업완료 후, 정산하지 않을 경우 환수
 - *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3자계약(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
-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가능
- ◈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불가

4. 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o (지원규모) 예산 81.2백만원(3개사 내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 중 ①~② 모두 충족하며, ③에 해당,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충북 소재기업
-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으로, 표준재무제표 상 3년 평균 총매출액의 50% 이상이 제품 매출에 해당하는 기업

- 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소기업(별점3 참고)
 - *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또는 80억원 이하 등 업종별 상이
- ③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하며 뿌리산업 영위기업
 - *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충북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으로 확인)
 - ** 동일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 신청 불가
 - 뿌리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첨5 참고)
 - * 14대 뿌리산업 업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필름·지류공정,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SW, 엔지니어링설계
 -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의한 업종 中 공장등록증 등 뿌리산업 영위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5. 사업별 지원내용 및 보조율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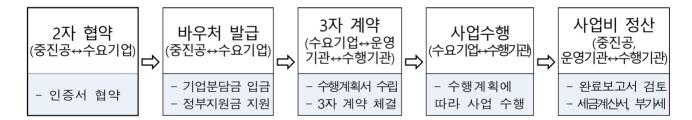
- o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시 협업승인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15
	AX·DX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권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20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15
	제품시험인증 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마케팅	홍보물 제작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20
	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0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45%	55%
120억원 초과(중기업)	40%	60%

ㅇ (바우처 사용기간) '25년 11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3	필수 ¹⁾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4	_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7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8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보유 증빙 서류
9	해당 시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❷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③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서식3) (⑥,②,③,⑨,⑩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공통우대 가점 사항 ²⁾ *최대 5점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서	지역중점지원업종 가점(1점)

-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2) ①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❷협업승인 기업, ❸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④재기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 ⑤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⑥원자재 수 입 영향 높은 기업(석유정제,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제조업), ✔지역혁 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❸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⑨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⑩소공인집적지구 소재 기업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 별첨1-1의「지적재산권 및 인증 확인서」와 각 지적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⑨)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 우대가점 연번(9)(1)~4)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7. 추진일정 및 평가절차

□ (추진일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문 의 처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3-230-534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연락처	관할구역
충북지역본부	043-230-6834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충북북부지부	043-841-3613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별 첨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1】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계획서

1.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2. 대표자 경력

		졸업역	견월	ŏ	교	학과(전공,계열)	졸업 수료 중의	퇴
대	학력							
	, ,							
丑								
27		기	간	근 .	무 처	근무처 업종	최종직위(담당업목	큐)
71	주요경력							
자	T=79 4							
	동종업종	1 ਜੋ	-J] ()]	77 XL	nl vlý			
	종사기간	년	개월	_ 포장 	및 상훈			

3. 주요 거래처

17	구분	업 체 명 (연락처)	거래품목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비 중 (%)	연간 거래액 (백만원)	거래기간	대금회수 기간
							개월	일
ᄜ	국내						개월	일
매 출 처							개월	일
처 	해외						개월	일
	에퍼						개월	일

4. 주주현황[주식 보유順으로 기재]

(20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명	경영실권자 와의 관계	소유주식 금액(백만원)	비율

5. 주요 생산제품 및 보유기술

제품용도 및 특성 (생산품 설명)	현재 주력 생산 제품의 용도 및 특성을 기재
제품생산 공정	주 생산제품의 생산 공정을 흐름순으로 기재
시 장 상 황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 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기격 비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에 대해 간략히 기술, 기술개발환경(기술개발 조직현황, 설비 보유 여부 등), 품질관리 현황 등 작성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현황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현황 작성(증빙서류 제출필요)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을 전부 포함, 인증은 국가 또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 승인하여 발행한 인증서 기준(ex. KS, KC, CE 등)

5-1. 바우처 사업 참여이력 및 사업화 진행현황(참여이력 보유 기업)

참여연도		매출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참여 서비스 (프로그램)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사업 참여 이후 발생한 신규 고용 인원수 기재
주요 성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협약 ³ 개선 성과, 추가적인 사업화 등 주		

[※] 사업 참여이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작성(필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6. 바우처 지원내용 및 추진계획

6-1. 수행 과제명

컨설팅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과제명(주제)을 작성. 신청하지 않는 분야는 삭제(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기술지원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6-2. 희망 수행기관

혁신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 내 [메뉴판]-[서비스검색]에서 신청기업이 작성한 "6-1.수행 과제"가 가능한 수행기관들을 확인 후 희망 순위를 **필수로 작성. 미등록 기관은 미등록으로 체크**

71 21-1	1순	22711171	플랫폼 내	V 등록	2순	21(2) 7 (1)	플랫폼 내	V 등록
예시) 컨설팅	위	OO컨설팅	등록여부	<i>□ 미등록</i>	위	OX연구원	등록여부	<i>□ 미등록</i>

괴서디	1,2,6)	컨설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ე스 jì	컨설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컨설팅	1世刊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2순위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기술	1 & 61	기술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0 & 01	기술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지원	1순위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2순위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3 3-3	- > ->	마케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마케팅 프로그램	플랫폼 내	□ 등록
마케팅	1순위	수행기관 1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2순위	수행기관 2순위	등록여부	□ 미등록
※ 중대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기업은 마케팅 부분 작성불필요							

6-3. 과제개요

바우처를 지원받아 수행코자 하는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 수행과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 용도, 기능, 사용처, 이미지, 목표시장 및 시장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등을 작성

6-4. 필요성 및 차별성

바우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타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등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6-5. 추진내용

신청 분야별 적용 및 활용분야, 추진계획, 추진 준비현황, 달성목표 등을 작성

6-6. 지원효과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의 연계 가능성, 예상매출 성과, 고용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

고용창출	고용 증가율	(%)	전년대비 고용 인원 증가율(%)	고용보험가입
	신규 고용인원수	(명)	인원 수	인원 기준
ᆒᅕᄌᆌ	매출액 증가율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재무제표
매출증대	매출 증가액	(천원)	전년대비 총매출액 중가액(천원)	기준

※ 기재한 예상 성과는 향후 완료점검 및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음

7. 사업비(바우처 금액) 조성 내역

구 분	신 청 분 야						
T T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합계			
정부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업분담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3억원 이하(85%), 3억원~10억원(75%), 10억원~50억원(65%), 50억원~120억원(45%)

120억원 초과(40%)

* 기업별 바우처 지원한도 : 50,000천원,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청시 신청분야 내 '마케팅' 공란

8. 추진일정[빗금색칠 혹은 Bar 표시]

신청분야	'25년								
신성군가	1	2	3	4	5	6	7	8	9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중대재해는 마케팅 작성불필요

9. 최근 3년간 정부 지원사업 및 과제참여 현황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과제 내용	참여년월

10. 혁신바우처사업 추진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최종학력 및 전공	예시)대졸, 경영학	생년월일		이메일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고		
경 력	~						
	~						
기타 특기사항	수상경력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서식2】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컨설팅'-경영기술전략 내 융복합 신청희망 기업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협업체	기본정보[신청시,	주관기업이	전담작성
--	-----	-----------	-------	------

Ξ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	생산품
	주관기업*					
협업체						
구성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기 업 대상 실시)

□ 협업 추진체계

기업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예)마케팅		31 17 11 −1)		
	예)디자인		제품사진	상세설명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i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 B 1	to B	☐ B to C	☐ B to G
협력모델 판로대상	પ્રે.⊐ ril Հો	국내			
	선도내상	국외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수행기관과 협업체 구성은 제한

【서식3】중소기업 밀집지역 관련 가점 서류 (해당 시)

ㅇㅇ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기관명	OO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센터장 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담당자명		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주 소 (도로명 상세주소)	(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요청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 확인				

가점 검토의견	위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대상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2025.00.00. ~ 2025.00.00.

2025년 0월 0일

ㅇㅇ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장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귀중

별 점1-1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제출 확인서 (해당시)

- ※ 인증 보유여부를 판단하여 목록 작성(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건만 인정)
- ※ 지식재산권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건만 기입
- ※ 등록권리자 확인 불가한 서류 제출 시 해당 인증 인정 불가
- ※ 증빙자료와 상이하거나 허위 기재 등의 경우 평가 반영 제외
- ※ 혁신바우처 플랫폼에 제출한 증빙서류만 실적 인정

│ │ ハध み 도		ו	임	정	부
-------------------	--	---	---	---	---

업체명	(□개인/□법인)	대표자명	
-----	-----------	------	--

□ 인즁 및 지적재산권 보유 목록

① 인증 목록

인증명	보유 건 (건수기입)	인증서번호 (미해당 시 공란)	인증일자	유효기간
ISO9001	1	Q123456	2020.9.22.	2023.10.16
ISO14001	1	Q234567	2020.10.01	2023.10.15
KSଥିଚ	1			
합계	3			

② 지적재산권 목록

구 분	보유 건	등록・출원번호	등록 권리자	유효기간
특허등록	1	10-1234567	(7)000	2025.3.1
특허출원	1	10-2023-0000000	(7)000	2030.10.1
실용신안				
상표권				
프로그램 등록				
디자인 등록				
기타 인증				

업체명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	--	------	----	--------

별 첨2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2) -1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 80억천 이야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 위 표 제23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 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 첨3

제조 중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8. 담배 제조업	C12			
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평균매출액등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품 제조업 C22 1,000억원 o			
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8.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9. 음료 제조업	C11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억원 이하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4.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 첨4 명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1년 ~ '23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1년.1.1 이전 설립 기업	- '21년, '22년, '23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1년 설립	- '22, '23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년 매출액
'23.1月 [~] '23.11月 설립	- '23년 매출액을 '23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3.12月 설립	- '23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4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4년 표준제무제표 발급 전)

r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1.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1년, '22년, '23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3.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3.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3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벌첨5

충북지역 지원대상 뿌리산업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뿌리산업의 범위

구분	업종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ᄤᄀ키ᄉᇵᆼᅅᄌ	24312	강주물 주조업
T = 1101	뿌리기술활용업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주조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금형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일처리산업 열처리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29150101	공업용로
	장비 제조업종	29150103	전기로
	0 1 1 1 1 0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H+I-I	뿌리기술활용업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표면처리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산업		1340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 공업
		13403	당면 가공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 장비 제조업종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뿌리기술활용업종	24222	제조업
	1-112200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소성가공 산업	-	24229	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101	액압 프레스
	B 배기기스에 하유디드	29224102	기계 프레스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801	금속 단조기
	이미 세포 비증	29224802	금속 인발기

1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24132	강관 제조업
		27132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
		24133	
			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0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
		26294	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
		30121	
			조업 지문자 미 토스 모저요 지도자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뿌리기술활용업종	00: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용접산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중엽산립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
			조업
		24244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
		31311	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
		31312	
		24224	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5995100	용접봉
		27216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28909301	아크 용접기
	장비 제조업종	28909302	저항 용접기
	01 /11 11 0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ſ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ELLIS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
	뿌리기술 활용업종	22241	
			조업
사출・프레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스산업		22213	제품 제조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장비 제조업종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구니기호 <u>결</u> 중 요중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정밀가공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		29223202	범용선반
산업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적층제조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		23119	(단, 복층절연유리에 한함)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2222122	디지다 지수 시시기계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0-1 11-10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산업용 필 름 및 지류		17124	
	뿌리기술 활용업종	22212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글니그국 <u>글</u> 제도급 글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
		22292	'
공정산업		40000	처리 제품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로봇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센서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산업지능형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뿌리기술 활용업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산업		12919	(단, 비파괴검사에 한함)	
엔지니어링	배기기스 하이어조	70400	기다 에지나이라 나비사어	
설계산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참고 >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소재지

ㅇ 위기지원센터 확인서(서식4) 발급 관련 문의처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033-248-5668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055-259-3324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053-819-3032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333	062-602-7233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동구 동대구로475	053-757-3708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042-930-4848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051-320-3532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052-219-8728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061-729-2500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063-219-2114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041-589-0163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043-270-2236

^{*}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제주는 위기지원센터 미설치지역으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별 첨6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05호	02-2106-7454 02-2106-7455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101~102호)	02-2023-4312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14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32
수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	032-560-2377
도 권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74
i i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031-760-9012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22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단원희캐슬 4층 431-434호	031-899-9115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23
강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3
원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033-649-9377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26
ュ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201-206호)	044-860-8307
충 ᅯ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48
청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홍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230-683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13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3
전 :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31
라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1
-,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1-280-8043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77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2 053-606-8433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2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054-288-7346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513호	053-603-3321
경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39, 23층(엠디엠타워)	051-630-7414
상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호	051-745-5923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276-8937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26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3
제 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64-754-5157

□ 관할구역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서울	서울	<mark>금천구</mark>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	<mark>서초구</mark> ,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북부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0] 2]	인천	<mark>연수구</mark> ,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	인천서부	<mark>서구</mark> ,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mark>수원시</mark> ,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	경기동부	성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mark>안산시</mark> , 시홍시, 광명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	<mark>화성시</mark> ,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대전	대전	대전시	
세종	세종	세종시	
충남	충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	충북	<mark>청주시</mark> ,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강원영동	<mark>강릉시</mark>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중진공 기준 복수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북서부	<mark>군산시</mark> , 고창군, 부안군	익산시
	광주	<mark>광주시</mark> ,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광주· 전남	전남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с п	전남동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장흥군
	제주	<mark>제주시</mark> , 서귀포시	
	대구	대구시	고령군
대구· 경북	경북	<mark>구미시</mark>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고령군	고령군
0 1	경북동부	포항시 ,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mark>경산시</mark> ,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mark>울산시</mark>	
부산	부산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북구, 부산진구, 동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경남	<mark>창원시</mark>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	경남동부	<mark>김해시</mark> , 밀양시, 양산시	
′о п	경남서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____: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